

(앞쪽)

제 호				
기술인력 양성명령서				
업체명			대표자	
소재지			전화번호	
직종	인원	양성기간	기술수준	비고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합니다.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				

자 르 는 선

제 호		
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수령증		
업체명		대표자
소재지		전화번호
수령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대표자와의 관계
	수령일	수령 장소

안 내 사 항

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지정된 날까지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.

※ 주의사항

1.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.
2.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.
가.
나.
다.